

매입임대주택 신청관련 서류제출사항

■ 공통 제출서류

제출서류	비 고	제출여부	제출기한
매입임대공급 신청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양식은 접수 장소에 비치 		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*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(법정대리인)가 서명 (주의)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·접수가 거부됨 		
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, 세대구성원의 전입일/변동일 사유, 세대구성 사유,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,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* 입주자 모집공고일(2017.04.28.) 이후 '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'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'입주자 모집공고일(2017.04.28.) 현재의 세대주'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		
신청자의 주민등록초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(이력)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(공급신청자 포함) 		
금융정보 등(금융·신용·보험정보)제공 동의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*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(법정대리인)가 서명 (주의)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·접수가 거부됨 		

■ 추가 제출서류

제출서류	비 고	제출여부	제출기한
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(예. 세대분리, 미혼, 이혼, 사별 등)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(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) 		
(신청자의 배우자) 주민등록등본	<p><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, 세대구성원의 전입일/변동일 사유, 세대구성 사유,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,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		
임신진단서 (또는 임신확인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(또는 임신확인서) 		
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시 제출 생략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외국인 배우자 포함할 경우 		



■ '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보호대상 한부모가족, 주거지원 시급가구' 추가 자격 입증서류

대상자	제출서류	제출여부	제출기한
생계·의료수급자	• 생계·의료 수급자 증명서		
보호대상 한부모가족	•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		
주거지원 시급가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거·교육수급자 : 수급자 증명서 • 차상위계층 : 복지대상급여(변경)신청결과 통보서,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,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(자활근로자 확인서),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,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,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•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% 이상인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택임대차 계약서 1부(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)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서도 접수가능 • 전용 입식부엌,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재 거주지 주소가 확인될 수 있는 사진, 부엌 및 화장실 사진 각1부 		

■ '장애인(소득 70% 및 100% 이하자), 소득 50% 이하자' 추가 자격 입증서류

대상자	제출서류	제출여부	제출기한
장애인	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, 분양권,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*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: 임대차계약서 사본(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) * 분양권 :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※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		
	장애인 증명서		

■ 배점항목표 입증서류(해당자만 제출)

-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제출

구분	신청서류	제출여부	제출기한
추가서류 (해당자에 한함)	<자활사업프로그램 또는 취업·창업 참여기간> •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(세대원 포함) • 취업·창업 참여 증명서류(세대원 포함)		
	<중증장애인> • 중증장애인 입증 서류(세대원 포함)		
	<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> • 가입은행 및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(http://www.ap2you.com)에서 발급가능 (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) ※ 발급기준일(모집공고일) : (2017.04.28) ※ 납입인정회차증명서 발급 관리번호 : 2017980022		
	<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> • 현재 거주지 주소가 확인될 수 있는 사진, 부엌 및 화장실 사진 각1부 - 전용 입식부엌,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※ 주거지원 시급가구 신청자로 기 제출한 경우 제출 불요		
	<소득 대비 임차료 30% 이상인 자> • 주택임대차 계약서 1부(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)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서도 접수가능 ※ 주거지원 시급가구 신청자로 기 제출한 경우 제출 불요		

